

농정 이슈 심층토론회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

2012. 9. 27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 이슈 심층토론회】 전체 일정

구분	일시	주 제	좌 장	발표자
제1차	8.30(목) 15:00	식량안보의 개념부터 바꾸어 보자	권용대 (충남대 교수)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차	9.06(목) 15:00	농산업경쟁력, 전략을 재점검 한다	서종석 (전남대 교수)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3차	9.13(목) 15:00	농가소득·경영안정화, 이렇게 접근해야한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제4차	9.20(목) 15:00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 하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유통연구부장)
제5차	9.27(목) 15:00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 정책을 제안 한다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장)
제6차	10.4(목) 15:00	농어촌정책, 외양 아닌 내실을 다져보자	윤원근 (협성대 교수)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7차	10.11(목) 15:00	조화·상생의 산림비전을 실현 하자	김지홍 (강원대 교수)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장)

【제 5차 심층토론회】 세부 일정

■ 세부 주제: 다문화 · 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

■ 기간 및 장소

- 기 간: 9월 27일(목) 15:00~18:00
- 장 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 토론회 일정

15:00~15:10 개회사

이동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15:10~15:30 주제발표: 다문화 · 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

박대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장)

15:30~18:00 종합토론

좌 장: 김정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자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모선희(공주대학교 교수)

박경아(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장)

손재범(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문수(농촌복지센터 대표)

조용래(국민일보 논설위원)

* 토론자는 가나다순임.

※ 플로어 토론 포함

18:00~ 폐회

< 목 차 >

1. 주제발표 :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3
2. 토론요지..... 41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

박대식 농촌정책연구부장

다문화 · 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

2012. 9. 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목 차 -

1. 문제의 제기	5
2. 농촌복지 관련 특별법 및 정책 추진체계의 현황	9
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및 기본계획	9
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기본계획	13
2.3. 농촌복지 관련 정책 추진체계	14
3. 다문화 · 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의 기본방향	14
4. 핵심 정책과제	16
4.1. 농촌복지 관련 특별법 및 제도의 개선	16
4.2. 농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25
4.3. 농촌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	27
4.4. 농촌노인의 생활안정 강화	31
< 참고문헌 >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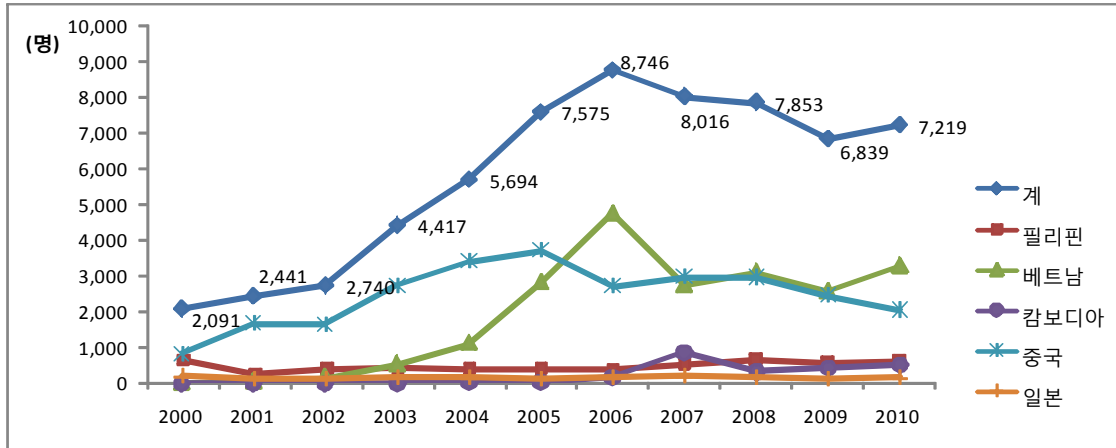
1. 문제의 제기

□ 우리 농촌사회는 이미 다문화·100세 시대가 임박해 있어

- 2000년 이후 농촌(읍·면)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유입건수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8,746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유입하였음. 하지만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9년에는 6,839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에 유입하였음. 그러나 2010년에는 7,219명으로 다시 상승 추세에 있음(그림 1 참조).
- 2005년까지는 중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이 유입하였으나, 2006년에는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가 중국의 2배 이상 유입하였음. 200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던 베트남 출신 여자와의 혼인이 2007년에는 전년보다 42% 감소하였으나 2009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임. 반면에 캄보디아는 2007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에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 농촌(읍·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은 베트남(45.5%), 중국(28.4%), 필리핀(8.6%), 캄보디아(7.0%) 순임(그림 2 참조).
- 2010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 건수는 도시(동부)가 18,605건으로 농어촌(읍·면부)의 7,219건보다 많았음. 그러나 전체 혼인에서 외국 여자와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농어촌이 15.7%로 도시지역의 7.4%보다 높았음.
- 2010년 농림어업종사 남자의 혼인건수 5,971건 중의 33.9%에 해당하는 2,023건이 외국여자와의 혼인이었음.
 - 농림어업종사 남자의 혼인건수 중 외국여자와의 혼인은 2000년 38.0%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무려 42.5%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33.9%를 나타냄.

<그림 1> 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촌 유입 건수 추이(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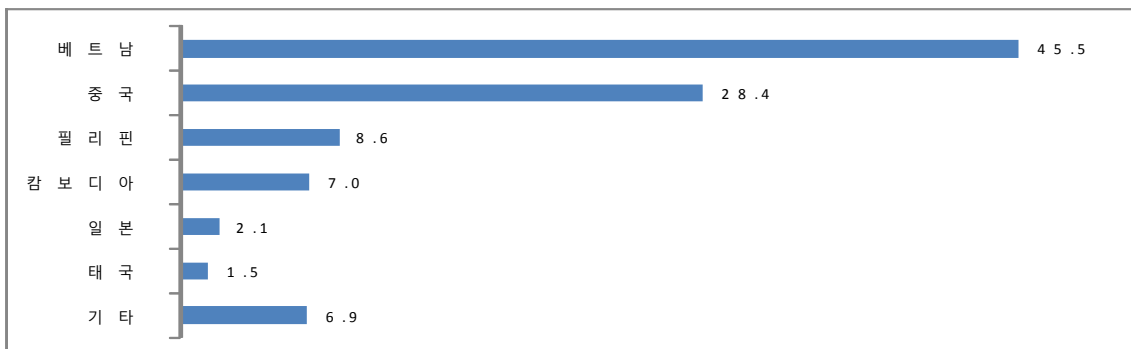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혼인·이혼 통계.

<그림 2>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분포(2010년)

단위: %, N=7,219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혼인·이혼 통계.

주: 기타에는 태국,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등이 포함됨.

- 100세 시대란 평균수명이 100세가 된다고 보다는 최빈사망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대)이 90대로 높아져 점차 100세 이상의 생존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임.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에 ‘최빈사망연령’이 90세를 넘어서게 되어 100세 시대에 이를 전망임.
 - 그 동안 먼 훗날 미래로만 여겨지던 ‘100세 시대’가 이제 우리들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 100세 시대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70~8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게 되어 인생 역정에서 유망 업종과 직업이 몇 차례 달라질 것임. 따라서 100세 시대에는 유망 업종 및 직업의 변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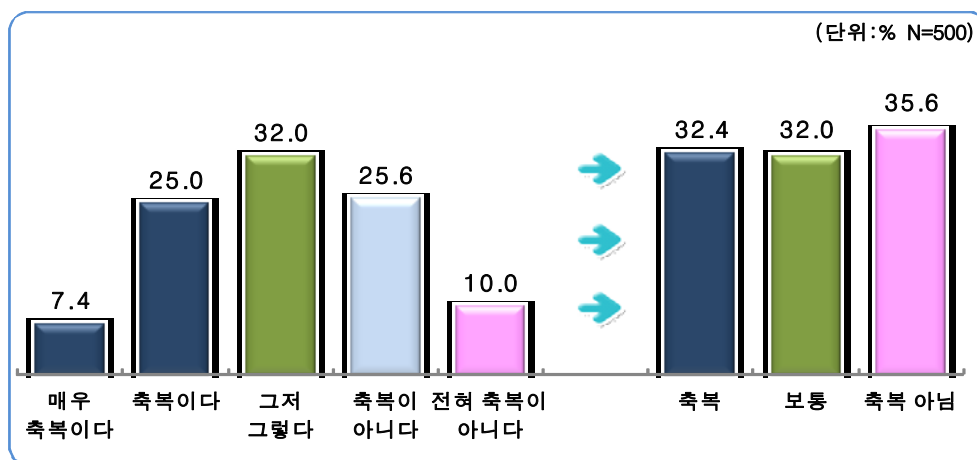
□ 농촌 다문화가족 문제는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음.

- 농촌 다문화가족은 일반가족과는 다른 여러 가지 독특한 문제를 안고 있음. 의사소통의 제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농촌의 다문화가족은 부부관계, 자녀양육, 가족관계,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며 이에 따라 국제결혼의 파탄 사례도 급증하고 있음.
- 이러한 농촌 다문화가족의 문제들을 이대로 덮어둘 경우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사회가 지불하게 될 비용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농촌 다문화가족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 자원임. 그러므로 농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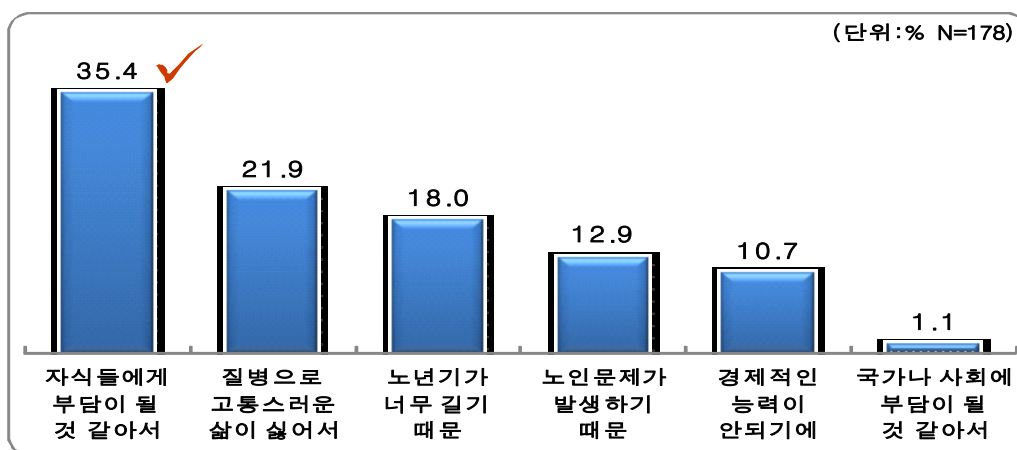
□ 인생 100세 시대가 점점 더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준비 안 된 100세의 모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재앙에 가까울 것임.

- 박대식 외(2011)가 농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하는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사람들이 90세 또는 100세 이상까지 사는 현상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축복’이라는 의견은 32.4%, ‘그저 그렇다(보통)’ 32.0%, ‘축복이 아니다’는 35.6%로 나타나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소 높았음(그림 3 참조).
 -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가 35.4%, ‘질병으로 고통스런 삶이 싫어서’가 21.9%,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 18.0%순이었음(그림 4 참조).

<그림 3> 100세 시대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인식



<그림 4>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 그러나 이렇게 100세 시대가 도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은 아직까지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아직 우리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국민의식은 80세 시대에 머물고 있음. 연금, 교육, 복지는 물론이고 교육, 취업, 정년제도, 그리고 개인의 재무설계와 인생플랜이 모두 '60세에 은퇴하여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음. 예를 들면, 국민연금과 같은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평균수명을 80세인 것으로 가정하고 설계되어 있어서 앞으로 도래하는 100세 시대에는 수정이 불가피 함.

○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서는 65세 이상 노령농업인들을 가급적 영농에서 은퇴시키고 시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접근을

해왔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100세 시대에는 ‘생산적 노인복지’라는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임.

-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는 현재와 같은 농촌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100세 시대의 도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음.
 - 젊은 시절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면서 장수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100세 시대 도래가 농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과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그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적 과제임.

2. 농촌복지 관련 특별법 및 정책 추진체계의 현황

- 농촌복지 관련 특별법은 농림수산식품부 주도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라 함)」(’04. 3. 5 제정·공포, 법률 제7179호)과 보건복지부 주도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이라 함)」(’04. 1. 29 제정·공포, 법률 제7151호)으로 구분됨.
 - 이 특별법들에 의거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및 기본계획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05~'09)

-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촌을 최소한 국민의 20%가 거주하는 복합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였음.
-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어촌' 구현을 목표로 복지·교육·지역개발·복합산업 부문에서 총 133개 과제를 추진함.
 - 5년간('05~'09) 총 22.8조원을 투입하여 당초 계획(20.3조원) 대비 112%를 집행함.

□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

-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의 비전은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을 구현하는 것임.
-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대 선진제도(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②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며, 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임.
-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7대 부문(보건·복지 증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여건 향상,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 강화)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그 항목별 최소한의 목표수준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농어촌 정책추진 시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 농어촌서비스기준은 8개 분야(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표 1 참조).

<표 1>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	항목	세부내용
주거	주택	최소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교통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인도(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방과 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의견 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보건 의료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순회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경찰 서비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문화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정보 통신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 농어촌영향평가제도는 농어촌 인구의 분산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을 고려, 정부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고, 불리한 차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임.

- 농어촌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농어촌의 특성은 ①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불리하고 서비스 이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였는가?, ② 인구밀도가 낮고 정책 수혜 대상자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였는가?, ③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분산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였는가?, ④ 여성 경제활동 인력 비율이 높고, 시간제 및 계절제 노동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였는가? 등임.
- 농어촌영향평가에서 정책(또는 사업)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검토해야 할 항목은 ① 지역경제, ② 농어촌 경관, ③ 전통문화와 공동체, ④ 농어촌 인구이동 등임.

○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투융자규모는 34조 5천억원 수준으로 제1차 기본계획 기간 실적(22조 8천억원) 대비 51% 증가함(표 2 참조).

<표 2>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투융자

구 분		2009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투융자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합 계		54,270	65,336	65,557	69,321	71,739	73,448	345,401
재원별	국 비	35,937	40,371	43,141	45,836	48,155	49,332	226,835
	지방비	18,112	24,324	20,935	21,994	22,051	22,519	111,823
	기 타	221	641	1,481	1,491	1,533	1,597	6,743
분야별	복지	7,943	8,648	9,091	10,131	11,128	11,148	50,146
	교육	6,530	5,795	2,641	2,374	2,443	2,450	15,703
	기초생활 기반 확충	20,137	26,596	23,453	24,438	25,769	27,047	127,303
	경제활동 다각화	6,749	7,374	7,012	7,269	7,342	7,461	36,458
	문화·여가	1,145	1,152	1,587	1,693	1,523	1,528	7,483
	환경·경관	11,766	15,770	21,773	23,416	23,534	23,819	108,312

- 1) 연도별 투자규모는 각 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연도 예산 편성 시 조정될 수 있음.
- 2) 지역발전 역량강화 분야는 경제활동 다각화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 분야에 포함.
- 3) 지방비는 국비 매칭자금 및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만 포함.
- 4) '09년 투융자규모는 제2차 기본계획 분야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 제1차 기본계획상의 '09년 투융자 규모와 다름.

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기본계획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05~'09)

- 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하여, 제10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심의('05. 6. 16)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였음.
- 5년간 총 2조 9,331억원의 투융자계획으로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보건의료공급 기반 개선 등에 대한 총 35개 과제를 추진하였음.

□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10~'14)

-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비전은 '더불어 행복한 농어촌,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어촌'임.
-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목표는 ① 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통합 강화, ②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및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임.
-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②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전적 투자 확대, ③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아동·여성·가족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⑤ 지역별 의료접근성의 격차의 최대한 완화 등임.
-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크게 3개 부문(기본생활 보장 강화, 연령·세대 사회통합, 보건의료기반 개선 및 건강 증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기간 중('10~'14)의 총 투융자금규모는 4조 5,421억 원으로 국비 2조 6,410억 원, 지방비 1조 9,011억 원으로 구성됨.

2.3. 농촌복지 관련 정책 추진체계

- 농촌복지 관련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체계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농어촌복지정책 관련 조직 등을 들 수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1개 중앙 부처 장관, 농어업인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복지정책 관련 조직으로는 농어촌사회과, 농어촌정책과 등이 있음.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복지정책 관련 조직으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등이 있음.
- 지자체에서는 농어촌복지정책이 각 사업에 따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사회복지과 등으로 나뉘어져서 추진되고 있음.

3.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의 기본방향

- 사회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연령 및 사회통합적인 시각을 견지하여 세대 및 사회문화적 통합과 균형, 파트너십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계층 및 지역 간의 양극화를 완화하여 농촌사회의 공생발전을 추구해야 함.
 - 다문화가족을 ‘건강가족 육성’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 즉, 다문화가족을 여성결혼이민자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일반가족보다 조금 특수한 가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이들을 건강한 가족으로 이끌기 위한 넓은 시각의 접근이 필요함.

- 가족의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필요
 - 다문화·100세 시대에는 가족의 의미와 비중이 커짐.
 - 농촌주민들은 가족의 생애주기, 영농 경험, 국적, 건강, 학력 등에 따라서 경제활동이나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
 - 따라서 농촌복지정책은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역할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생산적·참여적 복지정책을 실천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농촌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근로능력이 있는 농촌주민들을 위해서는 생산적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과 자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농촌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야 함.
 - 그 동안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되어 온 복지정책을 농촌주민 전체로 확대하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복지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함. 최근 정부의 복지재정이 상당히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농촌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관련 예산도 확충되어야 함.
 - 또한 농촌복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함. 특히, 복지제도 중에서 개별화와 지역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가 필요함.

- 도시보다 20년 이상 앞서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함. 즉, 농촌인구 고령화의 장기적 전망에 바탕을 둔 앞서가는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함. 그리고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고령화’로 바뀌고 있음을 감안해야 함.
 - 농촌노인을 소극적인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다가올 노동력 부족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인력의 생산적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농촌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와 자원 활용을 통한 다원적 복지제공이 필요함.

- 100세 시대에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함.
 - 노인을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통합적 정책지원 필요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통합적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 현재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부처별·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실정
이므로, 지역 내에서 이들 사업을 전체 풀(pool)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4. 핵심 정책과제

-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분야 핵심 정책 과제로는 ① 농촌복지 관련 특별법 및 제도의 개선, ② 농촌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개선, ③ 농촌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 ④ 농촌노인의 생활안정 대책 마련 등을 들 수 있음.

4.1. 농촌복지 관련 특별법 및 제도의 개선

□ 주요 문제점 및 논의사항

① 농촌복지 특별법 및 기본계획의 이원화

- 농촌복지 특별법 및 기본계획이 농림수산식품부 주도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보건복지부 주도의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 및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일부 사업은 중복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짐.

② 중앙 주도 계획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다양한 실천계획 포함 미흡

- 계획 수립이 주로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지자체의 계획은 중앙계획을 그대로 답습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창의적인 특화사업의 개발이 부진함.
 - 시·도 및 시·군 계획은 중앙단위 계획을 모방한 하향식 계획 수준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다양한 실천계획을 포함시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시·도 및 시·군 계획 수립 시에 사업부서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담당 부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경우는 주로 농정 관련 부서)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지자체와 민간의 다양한 실천계획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실정임.

③ 관련 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 활성화 미흡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나 연도별 시행계획 확정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 실무위원회도 활성화되지 못해 부처별 중복사업 사전 조정 및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집중 검토가 부족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사무국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해 관련부처와의 실질적인 업무 협의 및 총괄조정에 한계가 많았음.
-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경우는 1차 기본계획은 사회문화관계 장관 회의에 보고를 했으나 2차 기본계획은 별도의 보고체계와 점검체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④ 지방이양사업의 관리 곤란

- 2005년부터 중앙정부의 많은 복지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는데 이러한 지방이양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 단체장의 의지 미약 등으로 농어촌복지사업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도·농간 복지격차는 더욱 커질 것임.
- 지방자치단체장이 단기적인 선거 전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장기간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농어촌복지사업은 추진되기 힘들 것임.

⑤ 관련 사업 간의 연계 및 유사·중복사업의 체계화 부족

- 부처 간 및 각 부처 내 사업 간에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 유사한 목적의 관련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예산 배분의 소액화 및 경직화가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복지·보건·교육·지역개발·복합산업 등과 같은 부문의 사업들 간의 상호 연계 노력이 부족했음.
- 마을개발, 체험마을, 정보화, 다문화가족 관련 유사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함.

⑥ 지자체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지자체 사업 담당자들의 자발적 계획 수립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함.
 - 농촌복지 특별법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새롭게 사업예산이 확보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자체의 계획수립에 대한 유인이 부족함.
 - 사업 담당자들은 농촌복지 특별법 관련 기본계획에 사업을 포함시킴에 따라 업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나 사업의 성과 등의 측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별 다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관련 사업을 농촌복지 특별법 관련 기본계획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⑦ 현행 점검·평가제도의 한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경우 2010년까지는 부처 자체 평가 후에 외부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주요 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기존의 단위 사업별 점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로 구성된 정책군(2개)을 대상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함.
-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은 계획과 집행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활용에 대한 조항은 거의 없음. 그 결과 지난 5년간의 목표와 실적자료에 대한 취합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별도의 평가 및 모니터링(중간 및 마지막년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시·도 및 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점검·평가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임.
- 일부 사업들은 단순 투입지표를 성과지표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산출지표인 경우도 농촌복지 향상 측정과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의 실태와 주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연구가 미흡하여 농촌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 발굴이 부진했음.

⑧ 다문화·100세 시대 대비 과제 부족

- 다문화가족 관련 여러 부처의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여성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부 사업만이 기본계획에 포함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정 농업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을 다룸.

-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 강화(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사업만을 다룸.
- 100세 시대 대비 관련 과제는 소수에 불과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는 ①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농지 연금) 지원, ②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③ 농촌 건강장수 마을 육성 등의 사업이 있음.
 -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는 ①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② 노인요양 시설 확충, ③ 노인의치보철 지원, ④ 농어촌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이 있음.

나. 개선방안

① 농어촌복지 특별법 및 기본계획들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

- 단기적으로는 농림수산물부 주도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및 기본계획과 보건복지부 주도의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 및 기본계획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주민의 생활실태, 사회적 욕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물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관련 연구기관 등이 합동으로 농어촌복지 실태조사를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농어촌복지 특별법 및 기본계획의 통합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② 기본계획 수립방식의 전환

- 기본계획 수립방식을 기존의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군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은 시·군별 기본계획을 도 단위에서 취합·조정하고, 그리고 도별 계획에 기초하여 중앙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학습, 워크숍 등과 같은 상설화된 역량 개선체계를 구축해야 함. 그리고 시·군 및 시·도의 계획 수립은 농정이나 복지 관련 부서가 아니라 기획·예산부서가 주도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함.
- 기본계획 관련 사업들은 시·도 및 시·군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함.
 - 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은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접근

③ 관련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의 활성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합 조정과 기획 및 평가 기능을 갖는 위원회로 상설화해야 함.
 - 위원회는 농어촌정책과 관련된 모든 부처의 정책을 조정·평가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건이 제출되어 회의를 통해 이를 정리하고 위원회 차원의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안건을 만들기 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검토를 위한 인력과 시간, 법적 근거가 필수적임. 따라서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안건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농특회계의 사업별 예산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함.
 - 매년 예산 수립 시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농특회계를 기초로 한 사업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청 전에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예산 배분의 정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현재는 국무총리 소속임)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범부처적인 강력한 동력을 확보해야 함.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대통령 소속 기간은 '02.1~'07.12, 농식품부 장관 소속 기간은 '08.1~'09.12)가 해체된 이후에 농어촌 지역문제를 전담할 대통령 직속 기구가 현재는 없음.
-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경제·산업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농어촌 복지정책 전반을 총괄할 수는 없음.
-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가칭 '대통령 직속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위원회'로 격상시킴으로써 다수 부처에 분산된 관련 정책을 조정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대통령 직속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조직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나 지역발전위원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 직속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생활 인프라, 경제활동, 문화·여가, 환경·경관, 지역역량)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사무국은 농식품부에서 분리·확대하여 중립성과 행정력을 확보해야 함. 새로운 사무국(사무처)은 관련 부처 공무원, 전문가 등을 파견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함.

-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 및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서처럼 '사회문화 관계 장관회의에서의 보고'를 부활하거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 관련 인력과 조직 확충

④ 지방이양사업의 개선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즉, 지방이양사업의 경우에 지자체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서 감시·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이양사업 시행 여부가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함.
 -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조정과 지원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초적인 복지여건과 관련된 사업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중앙정부가 사후에 심사·평가하여 지역별 예산지원에 반영해야 함.
 -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내용을 유연하게 변경·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관련 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국가사업으로의 환원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농촌을 몇 가지 유형(일반 농촌, 추가 지원이 필요한 농촌, 우선지원이 필요한 농촌 등)으로 구분하여 국고 지원 비율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음.

⑤ 점검·평가제도의 개선

- 자체 점검·평가보고서의 실용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를 보완해야 함.
 - 사업별 양적 지표(사업 개소 수, 예산 집행 등)를 질적 지표(만족도 등)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중요 사업이나 문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평가 활동을 강화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20~30명으로 구성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점검·평가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도 및 시·군 기본계획도 의무적으로 점검·평가를 받도록 해야 함.
-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예산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점검·평가단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이 차기 시행계획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점검해야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점검·평가단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 담당자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과해야 함.
- 공정한 점검·평가를 통해서 우수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표창, 사업예산 배정 시 특별 배려)를 제공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2012년 4월 19일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현재 전담인력 3인)으로 지정되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정책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전담인력의 고용상의 안정성(정규직화)을 보장해야 함.

⑥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농어촌영향평가제도의 개선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사례지역 심층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수행한 결과 일부 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를 조정 하거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일부 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중에서 대표성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간소화 하고 항목 및 목표치를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우선 연차별 시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차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들이 세부사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함.
- 농어촌영향평가제도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
- 농어촌영향평가 대상 정책 수, 참여 공공기관 수의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함.
 - 대상 정책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영향평가 작업에 대한 지원 소요도 증가할 것임. 따라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전문지원기관’에의 자원 투입도 강화해야 할 것임.
- 현행 농어촌영향평가제도는 구상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농어촌 인지적 관점의 정책조정 절차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 농어촌영향평가제도가 어느 정도 착근되면, 이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정책 조정제도인 ‘농어촌 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인지 예산 제도는 적절하게 추진할 수만 있다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4.2. 농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 주요 문제점 및 논의사항

-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복지 수요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농촌 실정에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현행 복지제도는 농업의 산업적인 특성(계절성, 자연조건의 영향 등)이나 농촌의 지역적 특성(취약한 인프라, 산재되어 있는 고객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접근성 문제
 - 주요 사회복지시설이 읍이나 시·군청 소재지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서 면·리 단위 지역주민들은 교통편이 더 부족하고, 교통비와 시간이 더 소요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자원의 부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인프라 부족: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군이 아직도 상당수임.
 - 공공 및 민간기관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부족
 - 재정, 물적 자원, 기타 공공시설의 부족 등
- 읍·면 단위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과중 심각
 - 확대된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읍·면 주민센터의 소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집중되어 이들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실정임.
 - 면의 경우 1명의 사회복지사가 여러 가지 복지업무를 다른 행정업무와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 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의 부족

-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의 상시적 협력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민간과 공공의 소통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사례관리의 문제

- 사례관리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협력 부족
- 시·군청의 사례관리 담당자의 고용지위 불안정(계약직) 및 전문 역량 부족
- 사례관리를 양적인 실적 위주로 평가하는 문제
- 통합사례관리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사례관리 관련 예산의 부족: 사례관리 예산이 대상자 1인당 50만원(예외적으로 100만원)에 불과함.

□ 개선방안

- 읍 단위 지역과 면 및 리, 마을 단위 지역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도서벽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만 함. 이를 위해서는 1개 시·군 지역을 3~4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복지센터(가급적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고 다기능화를 함)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지역에서 사례관리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보충해야 하며, 교통편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함.

- 읍·면의 경우 최소한 2~3명 이상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복지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함.

- 농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한국 농수산대학 및 농협대학의 교과과정,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수과정 등에서 농촌복지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관련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광역 단위로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농촌복지학과를 계약학과(20명 내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장, 부녀회장, 마을 유지, 귀농·귀촌자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또는 마을복지지도자로 육성 및 활용
 - 계약학과 형태로 운영하는 농촌복지학과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과 더불어 졸업 후에 면 또는 권역별 복지센터에서 복지 코디네이터로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비 및 상근간사 인건비 지원
 - 도 및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 모색
- 시·군청 사례관리 담당자의 처우 개선 및 사례관리 관련 예산의 인상
- 정규직화 및 보수 인상
 -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사례관리 관련 교육 및 훈련 지원
 - 사례관리 관련 예산을 인상하고 용도제한은 완화
- 기관 경영평가에서 농촌복지사업 추진 실적을 적극 반영하여 농협, 수협, 농어촌공사, 마사회 등과 같은 농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농촌 복지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촌복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3. 농촌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

가. 농촌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사각지대의 개선

□ 주요 문제점 및 논의사항

- 농촌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농협, 시·군청, 여성농업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이 소재하는 시·군청 소재지나 읍 지역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소수의 전담인력으로 산재되어 있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어려움.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병합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소재하는 도시 중심으로 설치되어 농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일반 면지역에 사는 대다수의 다문화가족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자가용이 없어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 면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관련 기관 접근성 제고: 농촌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에 승합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승합차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는 대중교통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외의 농촌복지 관련 기관도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군청이나 읍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시·군을 3~4개 생활권역으로 구분하여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산하의 권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농협 등을 활용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산하의 권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병무청의 사회복무제도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보조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나. 결혼이민자 대상 영농교육의 개선

□ 주요 문제점 및 논의사항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농협을 통해서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정착 초기의 여성 결혼이민자 500명을 대상으로 기초농업교육을 실시하고, 기초농업교육을 마친 여성 결혼이민자 600명에게는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맺어주는 1대 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맞춤형 농업교육을 받으려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실제 영농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단계별, 품목별로 참여 및 수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농교육은 기초농업교육과 1대 1 맞춤형 농업교육 정도로 구성 되어 있음.

□ 개선방안

- 영농교육은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단계·품목별로 세분화
- 영농경험, 학력, 농업기반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실시
- 영농교육 시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교통편·교통비 지원
- 교육 시기를 주로 농한기로 조정
- 현장 노하우 중심의 영농교육 강화
- 농기계·차량의 운전 및 안전교육 실시

다.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경제활동 지원

□ 주요 문제점 및 논의사항

- 많은 결혼이민자들은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부족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결혼이민자의 취업이나 창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이행규정이 미흡함.
- 한국어를 거의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취업부터 하여 가정 및 직장생활이 모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 훈련이나 교육 시에 보육 대책이 부족함.

□ 개선방안

-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들이 체득하고 있는 각종 요리법, 가공·저장법 등을 활용하여 부업으로 연계
- 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식품 및 음식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결혼이민자와 전문여성농업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규 창업 관련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위한 멘토링제도를 운영
-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추가함.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한 결혼이민자들에게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취업 및 창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결혼이민자의 농식품 관련 직업 훈련 및 교육과 자녀 돌봄 서비스를 연계 하도록 함.

4.4. 농촌노인의 생활안정 강화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 주요 문제점 및 논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자립·자활 서비스를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함.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 운영에서 농촌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농촌주민은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판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
- 농촌은 빈곤인구비율에 비하여 수급인구비율이 너무 낮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원자료(2010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빈곤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비율은 서울시 57.7%, 서울시를 제외한 대도시 60.3%, 중소도시 47.5%, 전국 49.1%인 데 비해서 농촌은 28.3%로 나타났다(표 3 참조).

- 농촌지역에서는 자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산간지역 주민들은 읍 또는 시내로 이동하는 데 드는 교통비가 크게 부담이 됨.

<표 3> 지역별 빈곤인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비율(2010)

단위: 명, %

구 분	빈곤인구(A)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B)	비율(B/A*100)
서울시	504,722	291,249	57.7
서울시 제외 대도시	914,922	551,737	60.0
중소도시	1,433,115	680,234	47.5
농어촌(군부)	587,092	166,288	28.3
전국	3,439,853	1,689,508	49.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데이터 원자료(기준년도 2010년)」.

□ 개선방안

-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개선
 - 농업인의 실제소득 계산방식에 있어서는 현행 ‘농축산물 표준소득표’는 중상위 기술 수준의 선도농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므로 영세농가에 적용할 때에는 표준소득액의 일정비율만큼 감액하여 적용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선도농 대상의 소득조사를 확대하여 영농계층(영농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영세농가의 노동 능력과 영농 실정에 맞는 농업소득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함.
 - 그리고 농어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난방비, 교통비 등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개선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은 현재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감안하여 대폭 인하해야 함.
 - 농업생산 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농작물의 판매에 따른 순소득만을 평가해야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농업생산 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휴·폐경농지, 빈 축사 등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에 소득환산율을 낮추거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현행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부양능력 없음’ 기준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취약계층은 185% 적용)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점차 상향조정하여,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 기준까지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부양능력 판정 재산의 기본공제액 기준(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촌 2,900만원)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해야 함.
- 농어업인 특례제도 개선
 - 농어업에 직접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전부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지출요인으로 인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직접지불금의 종류를 확대해야 함.
 - 농어업 관련 부채의 이자에 대한 감면 확대
- 자활지원 사업 확대
 - 농촌의 자활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농촌 실정에 맞는 자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함.

나. 농지연금제도의 개선

□ 주요 문제점 및 논의사항

-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지 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임.
-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 농업인 사망 시에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임.

-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지급 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행’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기간형’이 있음.
- 농지연금은 장기의 금융상품으로서 월 지급액은 농지의 가격, 가입자의 연령, 기대금리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농지가격이 높을수록, 가입시점의 연령이 많을수록, 금리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됨.
- 농지연금이 정착될 경우 노후대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업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연금 모형에 따르면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76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됨.
- 농지연금제도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농지 소유 면적이 3만㎡(약 9,075평) 이하인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나 지역본부·지사에서 받음.
- 현행 농지연금은 농지가격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정당한 농지가격을 평가받기 어려운 실정임.
 - 공시지가는 대개 실거래가의 50~60%에 불과하므로 가입자에게 지급 되는 연금액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음.
 -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주택연금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남.
 -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영세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수령할 수 있는 농지 연금 금액이 소액에 불과함.
- 농업인 및 도시 거주 자녀들이 농지연금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3개 사례지역(금산, 고창, 봉화) 주민(225명)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651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지연금에 대하여 ‘매우 잘 안다’는 응답비율은 11.1%에 불과하고, ‘어느 정도 안다’는 응답 비율은 55.8%로 나타났다. 즉, 농촌주민 중에서 1/3 정도는 아직도 농지 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음.

□ 개선방안

-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해야 함.
-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정 규모(예를 들면,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일반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에서 일정 비율로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경향은 농지연금 확산의 주요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농업인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

□ 주요 문제점 및 논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5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할 수 있음.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로 구분할 수 있고,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로 구분할 수 있음(표 4 참조).

<표 4>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 종류		내 용
재가 급여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을 지원
	방문목욕	이동목욕차량, 이동식 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활동을 돕는 복지용구를 제공
시설급여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 요양시설: 입주자 10인 이상의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주자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시설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가족 등의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일부 지급
	요양병원 간병비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소요 비용의 일부 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임.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농촌지역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체계의 문제
 - 등급판정체계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도 1~3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 현행 등급판정체계는 치매, 우울증과 같이 대상, 장소, 시간 등에 따라서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변하는 경우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음.
 - 의사소견서 제출이 쉽지 않아서 등급판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음.
- 장기요양급여의 공급 불균형 및 요양기관의 경쟁 과열
 - 현재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방문요양은 공급 과잉 상태에 있어서 기관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음.
 -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조건
 - 현재 요양보호사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들의 보수가 너무 낮고, 대부분 시간제로 고용되어 있음.
 - 해당 요양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과 같은 법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용자 본인부담의 과중
 - 요양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해야만 하는 이용료(시설 20%, 재가 15%), 비급여 비용(식사 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이 과중하여 아예 등급판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급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 수 있음.
 - 시설급여기관(입소시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월 50~60만원이고, 재가급여의 경우는 월 12~17만 원 정도임.
 - 차상위계층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에 있어서 전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도 본인이 부담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임.

○ 낮은 인지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아직도 잘 모르는 농촌주민들이 많음.

○ 기타 문제점

- 등급외 판정자 및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지역별 정보가 충실하지 못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에서는 전국 및 시도별 자료 정도만 제공하고 있어서 시·군이나 읍·면별 상황을 알 수가 없음.

□ 개선방안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체계 개선

- 등급판정 시 치매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2~3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등급판정항목에 정신·신경 관련 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 의사 등을 활용하는 ‘찾아가는 의사소견서 서비스’를 도입

○ 지역별로 적정 수준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요양병원의 파행적인 운영 시정

-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므로 기존의 기관들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가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함.
- 현재 요양병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상대로 행하고 있는 각종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함.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수진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론 및 실습교육이 계획표대로 제대로 실천되도록 감독해야 함.
- 현재 많은 농촌 장기요양기관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영양사, 물리치료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함.

○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경감방안 현실화

- 현행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는 최대 월 12~17만원이고, 시설급여의 경우는 월 25~29만원(월 25~30만원 수준의 비 급여 항목을 포함하면 월 50~60만원)으로 농촌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
- 보건복지부의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는 과거의 경감기준(국민건강보험료 하위 15%)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농촌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저소득층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경감의 내용에 있어서는 시설급여기관(입소시설) 이용 시 필요한 비급여 항목 비용(월 25~30만 원 정도) 경감 또는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도시의 사회운동단체, 종교단체, 대학, 기업체 등과 농촌 저소득층을 연계하여 후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일본처럼 경제적 어려움으로 본인 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할 때에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신문, TV, 라디오, 이장단회의, 영농교육, 농어업인단체 모임 등을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지역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시·군·구별로도 작성하여 공표해야 할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을 요양기관별, 동부(도시) 및 읍·면부(농촌)별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농촌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0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05~'09)」.
- 김태완 외. 2010.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 · 농림부. 2005.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09.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11. 「2010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12. 「2012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 박대식, 마상진. 2012. 「농촌사회의 공생발전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04. 「농산어촌 복지 · 교육 ·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06.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0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05~'09) 중간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09a. 「삶의 질 향상 기본 · 실행계획 추진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09b.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11a.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11b.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201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 2012. 「201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정경희 외. 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0세 시대 가족」. 제69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토론 요지 >

김태완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선희 교수 (공주대학교)

박경아 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손재범 사무총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문수 대표 (농촌복지센터)

조용래 논설위원 (국민일보)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에 대한 토론요지

김 태 완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농어촌 고령인구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농어촌 현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다양한 농어촌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문제제기와 더불어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공동화되어가고,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소득에 놓여져 있는 농어촌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 주요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논문에서는 현재 농어촌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고 필요한 부문에 있어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문제로 다문화가족의 증가, 100세 사회의 도래를 다루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현행 농어촌지역 관련 복지정책의 이원화, 전달체계 문제 등을 핵심적인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제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필요한 부문에 있어서는 첨언하는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2. 농어촌 문제제기

논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농어촌 다문화사회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인구는 약 141만명이며 이중 47.5%가 시지역, 43.5%가 구지역에 농어촌지역인 군지역은 127천명(9.0%)로 분포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농어촌에 비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도시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농어촌 다문화와 관련하여 향후 논의가 필요한 부문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외국인자녀들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중인

17.0%로 성인들에 비해 2배 가까이 많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자녀들에 대한 교육, 일자리, 사회통합 등의 방안들이 함께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표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2012년 1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외국인규모			외국인자녀		
	계	남	녀	계	남	녀
시	668,908	368,004	300,904	82,517	42,243	40,274
구	613,542	293,760	319,782	57,346	29,209	28,137
군	127,127	69,706	57,421	28,720	14,717	14,003
소계	1,409,577	731,470	678,107	168,583	86,169	82,414
시	47.5	50.3	44.4	48.9	49.0	48.9
구	43.5	40.2	47.2	34.0	33.9	34.1
군	9.0	9.5	8.5	17.0	17.1	17.0

자료: 행정안전부(2012),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두 번째는 농어촌거주 노인들에 대한 낮은 소득과 이로 인한 빈곤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농어촌의 고령화 특히 논문에서 지적하신 100세 시대에 즈음하여 농어촌 노인들의 소득문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어촌거주가 빈곤화 될 수 있다는 점은 농어촌으로 귀촌 및 귀농을 낮출 수도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소득보장의 방안들이 함께 제기될 필요가 있다.

〈표 2〉 농어촌 노인가구주 가구빈곤율

(단위: %)

구 분			중위(경상)소득		
			40%	50%	60%
노인가구주 가구	도시	2005	41.1	52.1	60.1
		2006	39.9	52.1	61.1
		2007	39.8	50.6	59.6
		2008	39.5	50.7	58.9
		2009	37.2	49.2	57.6
	농어촌	2005	61.5	74.7	79.9
		2006	54.8	69.3	78.4
		2007	50.8	65.3	76.0
		2008	47.8	66.0	74.9
		2009	44.7	59.8	7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년도

3. 농어촌 복지지원 방안

먼저 농어촌 복지관련 계획과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며, 많은 개선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는 실태조사가 정부 합동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의 경우, 기존 복지지원제도에 대한 현황과 일부 사업들에 대한 현황 및 만족도 조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농어촌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에 입안하기 위한 기초통계로서 활용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 실태조사를 통해 농어촌지역 및 농어업 종사자들의 복지욕구, 소득 및 자산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구축되어야 한다.

농어촌 복지관련 계획 중 보건복지부 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동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3차 계획 수립 시에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농어촌관련 단체나 기관들의 지적들이 법안 개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농어촌관련 복지계획들이 힘 있게 마련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가 상향조정되는 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논문에서 제안하고 게시는 대통령 직속으로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며, 부처내에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내에서도 관련 과 혹은 팀단위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농어촌 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일례로 한 대학에서 농어촌복지관련 수업을 개설하고자 했지만, 관련 과목이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이나 취업에 도움을 주지 못해 개설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농어촌복지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수업이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들이 함께 강구되었으면 한다.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관련해서는 상근직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군지역 지자체들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상근간사를 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상근간사 역할을 농수협의 복지관련 인력이 함께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2차 삶의 질 계획에서도 농수협의 지역복지협의체 참여를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간사의 역할을 농수협 직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들 직원을 통해 지역복지사업에 농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그 자녀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 일자리 지원 등에 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 사업은 결혼 이민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들 자녀들이 농어촌지역에 남고자 할 경우 중고등 시절부터 영농교육을 통해 바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농어촌의 관련 기업들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취업교육이 연계되는 노력들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 자녀들이 주변인들과 융합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또는 직장내에서 상담, 심리치료 등 학교 및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미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농촌노인과 관련하여 논문에서 제시하는 문제와 대안들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농촌노인들에게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은 많은 소득은 아니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문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등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이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논문에서 제기된 개선방안과 더불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으면 한다. 이미 연구자께서도 여러 논문에서 제안하셨듯이 농어촌 거주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단계별로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고 내년에 신정부가 들어선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봤으면 한다. 이외에 농촌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을 위한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지만 사업량이 작고 용자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저소득 농촌노인들은 접근이 어려우며, 복지재단 등을 통한 주택개량 후원사업 역시 사업량이 작다는 점에서 많은 농촌노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건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리해야 하지만 농촌노인들은 의료비 부담, 의료시설 접근성 어려움 등으로 충분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농촌 노인 특히 독거노인들의 만성질환관리 등을 위한 지원 내용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 에 대한 토론요지

모 선 희 교수 (공주대학교)

우리 사회는 2000년 이후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압축적 고령화 현상과 함께 2005년 출산합계율 1.08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고, 2020년에는 최빈사망연령이 90세를 넘어서는 100세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등의 유입으로 다양한 민족, 인종이 증가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들은 농촌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주제 발표에서 구체적인 현황과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의견과 제안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1. 농촌 현황

-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 농·산지의 이용: 농산업 중심--> 여가 및 관광 공간으로 활용,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대, 농촌전원주택의 수요 증가 등
- 보건의료, 교육, 복지, 여가문화시설 등 도시 편중, 생활편익 시설 미흡
-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의 복지, 보건의료, 환경 등 기반구축이 절실

2. 농촌복지 관련 법, 제도 진단

- 1990년 『농어업특별조치법』 제정
- 1992-1998년 1단계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사업 추진
- 2002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 출범
-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 수립
- 2004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기본계획 수립/추진:

농촌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의료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 문제점:

광범위한 농촌 지역에 대한 접근성 낮음. 인적 물적 자원 부족,

국가정책에서 한 영역일 뿐 항상 minor한 위치, 법, 제도 아직 미흡

3. 농촌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

-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적 통합 유도

- 농촌 특색 고려한 정책, 농촌형 전달체계 구축 필요

- 농촌의 복지, 보건의료, 환경 등 기본 인프라 구축

- 농촌 지역활동가 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 과학적인 기초 조사, 우수 실천 사례 발굴 및 공유

- 학계, 농촌복지 실천 현장 등의 적극적 노력 필요

4. 실천적 사례

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 2010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개소 이후 30개의 시·군 무한돌봄센터 운영

- 주요 기능: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복지서비스의 조정, 사례관리지원

-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복지사업 개편, 사회복지시설 기능 조정, 통합전산망 구축) 개편이 추진되나 지역 특색 반영 한계극복 방안

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어촌 행복더하기 사업

- 2008년 전남 신안군 “신안샘터”, 충남 청양군 “청양샘터” 개소(3년 지원 12억)

- 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다목적 복지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기초 생계 및 의료, 정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관련 체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전문위원회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어촌 복지활동가 양성사업

- 광주대학교 참여복지센터 2009-2012년 농어촌복지활동가 양성사업 운영
- 주요 내용: 실천가 과정, 주민지도자 과정, 대학생을 위한 예비 사회복지사 과정, 교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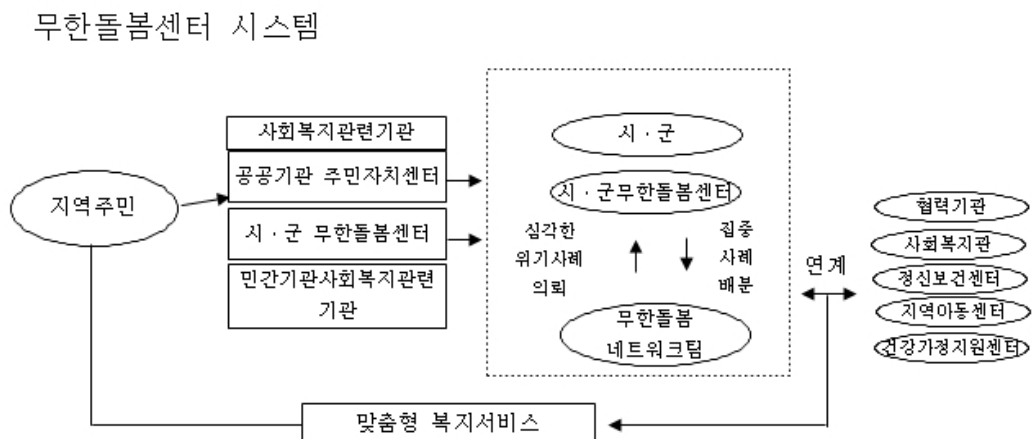
라.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복지모델

-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1998년 위탁 운영 -- 접근성, 자원의 한계
- (2005년) 거리, 교통, 지리, 문화적 특성 고려하여 8개 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거점센터 운영
- 기능: 민간-공공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자 발굴, 프로그램 개발, 사례관리, 정보제공 등
- (2008년) 복지도지도자대학 운영(복지도지도자협의회, 리단위 복지전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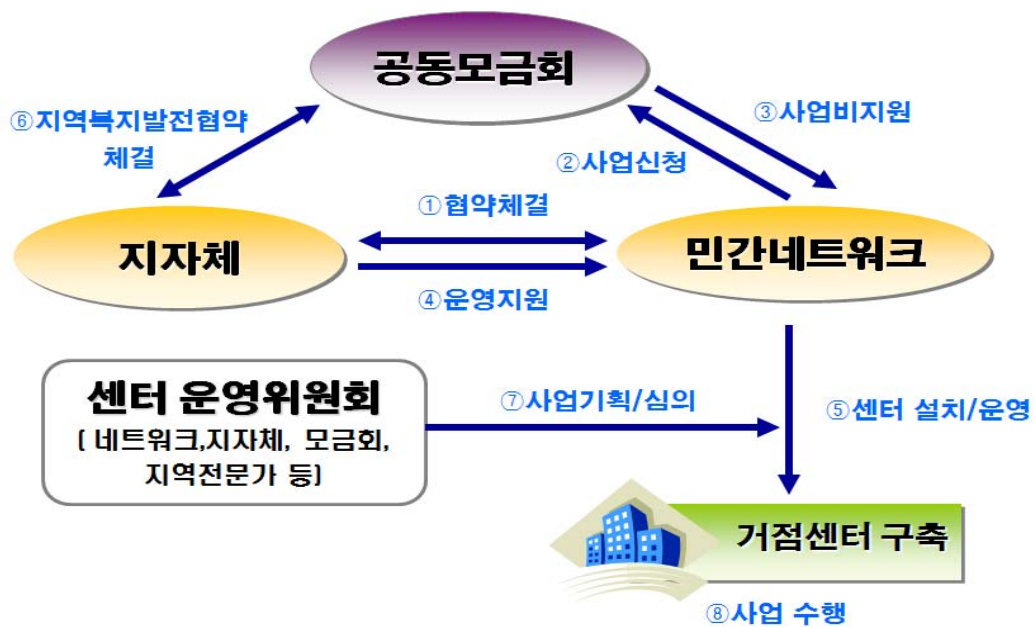
마. 농어촌 복지포럼 창립(2010년 3월)

- 농촌복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정책대안 생산의 기능을 수행하며, 농촌 복지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주체적으로 농촌복지 발전에 선구적 역할
-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적 통합 유도

< 참고 자료 >



행복더하기 사업 거점센터 운영체계도



행복더하기 사업 거점센터 사업 흐름도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 에 대한 토론요지

박 경 아 과장 (농림수산식품부)

1. 발표 요지

- 우리 농어촌사회의 모습으로 다문화 가족의 증가, 고령화 사회의 심화(100세 사회) 등을 특징적으로 제시하고, 현재 농촌복지 정책의 추진체계 및 기본계획 등에 대한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농촌복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발표자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하여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고, 핵심과제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추가하고자 한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농촌복지 관련 특별법 및 제도의 개선

- 농어촌복지 관련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은 근거법령, 계획의 범위와 수립 주체 등이 상이하지만, 장기적으로 두 법률과 기본계획을 통합해야 한다면 상위계획이고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및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을 포괄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통해 11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농어촌 보건복지계획은 복지부에서 단독 수립하는 보건복지 분야의 계획으로서 삶의 질 계획의 일부임)
- 삶의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두는 것은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 삶의질 기본계획의 점검·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11년부터 주요 정책을 선정 (삶의 질 위원회 심의)하여 심층평가를 실시
 - * ‘11년도 :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지원
 - * ‘12년도 :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역량 강화 정책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 및 목표치를 수정·보완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계획과의 연계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어촌 영향평가의 경우 관계기관의 공감대 형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매뉴얼을 보완하였으며, 대상 정책의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
 - * '11년도 : 방과후 학교정책(교과부), 여성경제활동 확대정책(여가부)
 - * '12년도 : 평생교육진흥정책(교과부), 응급의료정책(복지부)
- 농어촌인지예산이 도입되면 사전에 농어촌 투입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현재 실시중인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와 함께 운영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임

나. 농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 농어촌의 접근성이나 지역이 넓으나 인구가 과소화된 특성으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봄.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영역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설치,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방과후학교(입법 추진 중) 지원 등의 제도가 있으므로, 농촌지역에서도 영유아·초중고생 등을 돌보고 학습 및 특기적성 등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함
-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방과후학교 등을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아이들 수가 적고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시설이 부족하고 농촌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때문에 도시로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농촌지역의 접근성이나 수요가 소규모인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그외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영역별 칸막이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별도의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야 하는지 등)
- 금년도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연구과제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앞서 말씀드린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상의 어려움과 한계, 외국 사례, 정책적 대안 등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함

다. 농어촌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 농어촌지역에는 지속적으로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음. 농어촌에는 젊은 층 인구 유입이 거의 없어, 앞으로 결혼 이민자 및 자녀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 농어촌에 남아 농업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 현재의 정부 정책은 결혼이민자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그 자녀들의 보육, 교육, 취업 등의 문제에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 농어촌지역의 다문화자녀를 위한 정책 개발 등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해당 마을의 여성농업인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함. 최근에 여성농업인 단체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의 회원들이 앞장서 결혼이민여성과의 멘토링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임.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봄

라. 농촌노인의 생활안전대책

- 최근 농촌경제연구원 토론회 자료(농가경제 자료 재분석)를 보면, 농가소득의 전반적인 하향 추세와 함께 농가간의 소득 격차도 확대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에도 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농가 비율이 23.7% 이상이고, 그중에 65세 이상 농가가 64% 수준이라고 분석되었음
- 다양한 직불금 지원은 농지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저소득층의 영세농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특히 농지가 거의 없거나 소규모인 영세·고령농의 생활안정 대책이 필요
- 영세·고령농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농어민 특례 확대,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등은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노력을 추진 중임
-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개선을 위해 농지가 농업소득 및 재산으로 이중 계산되는 문제 해소, 농지의 재산평가 환산율 조정, 부양의무자 특례(주업이 농어업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을 추가 공제) 등의 방안을 마련, 복지부와 협의 예정
-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13년 58억원 반영) 등으로 연금보험가입자를 확대하고, 기준소득 금액 인상 등의 노력 추진

현장농업인이 요구하는 농촌복지과제

손 재 범 사무총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 통합적 농어촌복지추진체계 및 재원 발굴

가. 농어촌특별세 확대

2014년 7월 종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연장하고, FTA 등 피해가 심한 농어촌지역의 복지 확대를 위해 재원 확대

나.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현재 국무총리 소속에서 가칭 '대통령 직속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 위원회'로 격상시킴으로써 다수 부처에 분산된 관련 정책을 조정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도 해소함

2.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선에 따른 삶의 질 향상

가. 개별 농어촌 지역 맞춤형 공공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를 발굴하여 확산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과 지역발전의 목표에 부합하는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함. 예) 신안군 지자체 직영 공영버스 운영, 화천군 기숙형 학원인 화천학습관 운영, 진안군 마령면의 공동체박물관

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독려를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 도입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강제 또는 의무 이행사항이 아닌 권고에 가깝게 규정되어 있기에 지자체의 기준 이행 독려를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함
- 개선정도가 우수하거나 혁신적 복지서비스 도입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계 공무원을 표창함. 예) 지자체별로 1등 2억원, 2등(2개지역) 1억원, 3등(3개지역) 5천만원 등 포상금을 지급

2. 농어촌 사회안정망 구축

가. 농어촌 사회안전망 제도 가입률 확대

- 국민연금 가입률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시 농어촌지역 특수성 반영
- 농업인 공제제도를 발전시킨 농작업 재해보험제도 도입

나. 농작업 재해보험제도를 추진

- 농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작업 재해보험제도를 추진함
- 강제가입 형태로 모든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시행함
- 우선 사망 또는 장애 시 지급하는 공제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어촌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 농업인의 실제소득 계산방식에 있어 '농축산물 표준소득표'는 중상위 기술 수준의 선도농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므로 영세농가에 적용할때는 표준소득액의 일정비율 만큼 감액하여 적용 함
- 농업생산 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휴·폐경농지, 빈 축사 등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에 소득환산율을 낮추거나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180%수준으로 상향 조정 함

라. 65세 이상 영세 고령농에 대해 농업인특별보조 제도 도입

- 실경작 1.5ha 미만 혹은 가구별 1인당 소득이 1,500만원 미만 대상
- 20년 경력이상 매달 30만원, 30년 경력이상 70만원 지급

마. 주요 부문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과제

- 교통 부문(완전 무상 버스) 도입, 주거 부문 (산간 오지 및 도시지역 등에 대한 난방유를 면세유로 공급, 저소득층 노후 주택 계량 사업 확대), 교육 부문(농어촌 특별 전형 농업인으로 한정, 지역화·다양화·특성화에 의한 농어촌학교 육성), 보건·의료 부문(오지 마을에 대한 순회 방문 서비스 확대, 산부인과 분만실 공동 이용 방안 마련 등)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에 대한 토론요지

이 문 수 대표 (사단법인 농촌복지센터)

1. 농어촌복지특별법 및 삶의 질 계획에 관한 내용

가. 삶의 질 계획의 지방비 문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등을 통해 농촌주민들의 복지증진 방안으로 1차 계획 시행기간인 5년 동안 20.3조원을 4대 분야 133개 사업에 투·융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까지 22.1조원(추정액)으로 108%의 초과달성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농산어촌의 삶의 현장은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지고,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 지고 있다. 그리고 전체 예산 중 40.3%에 달하는 높은 지방비부담도 문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분배문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시·도 계획과 시·군·구 계획이 수립 및 시행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종속될 수밖에 없어 독자적인 지역복지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선성장 후분배」 정책을 추진하듯 자치단체장들도 재선(再選) 때문에 주민의 지지를 의식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어 복지재원 및 복지재원분배가 심각하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창의적인 특화사업 개발이 부진하다.

2. 농업 및 농촌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

가. 농촌복지사업의 대안은 지역복지 모델이 적합

우리사회는 1970년 산업화 이전까지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왔던 민족이다. 또한 농경문화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통한 집단영농을 중요시하여 공동체문화를 발달시켰다(문재현). 그러므로 현대 사회가 물질중심, 개인주의, 핵가족화 되어가는 문제를 농경문화의 혈연중심의 동질성, 협력과 조화로운 생산공동체 방식이 갖는 장점을 활용한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 복지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지역섹터에 적합한 모형과 프로그램 개발

농촌지역의 복지사업은 고정되어 있는 거점센터 한계와 이동거리가 넓은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형센터가 만들어져도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면과 리 주민들의 이동권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건물만 지어놓고 1~2년은 돌아가겠지만 그 후 예산 낭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권역별 센터의 하드웨어(시설인프라)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 보다 먼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와 마을경로당을 활용(2007년 농림부 제안 내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그리고 마을경로당의 시설 인프라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읍 기반시설, 면 기반시설, 마을기반시설로 분류하고, 기반시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다. 농촌복지의 전달체계에 관한 의견

농림부의 독자적인 농촌복지 전문전달체계를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전문성·통합성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통합적인 사례관리, 민관협력 강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따라서 농림부의 농촌복지사업의 승패는 농촌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영세·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대책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복지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고, 농촌지역의 일반대상자는 자부담 때문에 수가 사용비율

(50% 이하)이 낮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자부담을 없애고 일반대상자의 부담 비율도 10%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더불어 농촌지역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보험 표준이용계획서 내의 금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합천군 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4.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내용

가.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한 의견

농업인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의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 요양급여의 1사고당 150만원 한도이고 농작업 중 재해 및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1일 2만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다.(출처 : ‘농업인 재해보장’ 법제화 목소리 커진다’, 허누나라, 2012. 3) 하지만 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에서 요양비 전액을 보장받고 휴업급여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OECD 국가 30개국 중 22개국이 농업인 재해보장 관련 법안을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등 18개국은 농민에 대한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하고 있다.

나. 농업인재해보험에 관한 의견

농업인재해보험이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해 피해가 증가하면서 중요한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2001년 관련법 제정 이후 2012년 현재 35개 가입품목이 확대되었지만 재해보험보험료의 자부담비율이 지역에 따라 20%~30%로 높고, 품목과 재해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농가가입률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 확대와 시행지역과 보상재해 범위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 또한 재해보험의 보상비도증액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지원이 50%→70%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부분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농민들이 능동적으로 대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지역별 작물선택 등)등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5. 제언

농민의 행복지수를 고민해 본다. 농민이 도시민에 비해 사회안전망 지수, 삶의 질 만족도, 미래사회에 대한 만족도, 공동체의식 등 현재 농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하다. 현재 농촌은 개인주의, 물질중심, 핵가족화 등으로 혈연과 지역중심의 협력과 조화로운 공동체의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원인으로 1992년 이후 농업공적자금의 지원으로 급격한 빈부격차, 공공이익에 대한 무관심과 개인이익 중심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산업사회 이후 농업정책에 대한 홀대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농촌다움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 농촌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농 중심의 식량안보와 먹거리 제공의 농촌의 가치를 추구 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 협력과 조화로운 생산공동체 중심의 지역공동체 중심의 농촌의 가치를 추구 할 것인가?에 의한 농업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에 대한 토론요지

조 용 래 논설위원 (국민일보)

1. 문제의 제기와 관련하여

가.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 문제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이하 ‘제안’)의 문제 제기는 시의 적절하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농림어업종사자의 남자 혼인건수 5971건 중 신부가 외국인여성인 경우는 33.9%(2023건)나 된다. 다문화가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농림어업종사자 남자의 외국여성과 혼인이 2000년 38.0%(농어촌 외국결혼 이민자 유입건수 2091명=그림 1), 2006년 42.5%(8746명), 2010년 33.9%(7219명). 추세로 보면 2006년 피크를 이룬 이후 감소세로 전환, 2009년 이후 점증추세다. 원인은 무엇인지, 원인파악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대책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 아닌지 모르겠다. 핵심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 구분해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로서, 부부관계, 자녀양육, 가족관계,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3쪽) 이것들은 언어소통 애로라는 핵심 문제에서 빚어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언어습득능력 해소 없이는 부차적인 문제들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므로 대책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야 할 것으로 본다.

‘제안’은 다문화가족 문제에 대해 사회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10쪽)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습득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는 시급하다. 엄마의 언어능력을 높이는 일은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 2세들의 언어능력 향상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궁극적인 목표를 ‘건강가족’(11쪽)에 두고 있음은 현재 다문화가족이 건강하지 않은 가족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차별적 용어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문화가족에 대해 한국 사회에 ‘동화(同化)’하기를 강조하는 것보다 한국사회가 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며 다문화가족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나. 농촌지역의 100세 시대 동향

65세 이상 인구비율인 고령화비율이 농어촌지역에서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촌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의 높은 고령화율의 원인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배경은 농촌지역의 인구유출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결과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원인에 대한 대안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어촌주민의 100세 시대에 대한 인식(4쪽, 그림 3·4)은 특별히 농촌지역만의 특수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4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국민의식은 80세 시대에 멈춰있다는 지적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식이라고 본다. 시스템과 국민인식이 현실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은 사실이나 그 때문에 제도적 대응이 미처 따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생산적 노인복지’(5쪽) 관련 문제인식과 관련하여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농어업의 특징, 즉 영세 자영업적 성격이다. 자영업은 대부분 ‘1인 기업’ 내지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종사자가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고령자라고 하여 나이 때문에 현장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제도적 속박을 받지 않는다. 이 같은 특징은 농어촌 고령자의 고용안정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노인을 수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제안’(12쪽)에도 부응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과 관련해 고령자 현직종사자에 대한 연금 지급유예 및 그에 상응하는 연금수익보장 대책 등이 필요하다.

2. 농촌복지 관련 특별법 및 정책추진체계 관련

가. 정책 수행 주체와 통합의 문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2004)’,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농어촌 보건복지특별법, 2004)에 의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현재 2차 5개년 계획 운영 중, 2010~2014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인 대응이라고 하겠다.

정부의 대책이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운용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제안'은 13쪽 이하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기본계획의 이원화, 관련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활성화 미흡, 유사·중복사업 체계화 부족 등을 꼽은데 이어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지자체의 인식부족, 그에 대한 평가제도 미비 등을 제기하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토론자의 경험에 따르면(2006년 신활력사업 관련 특집기획보도, 국민일보)특히 지자체 현장의 담당자는 중앙정부 두세 곳에서(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명령을 하달 받아 과연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제도 그 자체보다 지자체장의 수준 내지 문제인식 정도, 현장 공무원의 개인적인 역량 등에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분명한 제도적 체계를 완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법·제도도 현장에서는 결국 주먹구구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통합체계 정책을 개발하는 정부의 최상층은 물론이고 정책을 실행하는 말단 현장에 이르기까지 일사분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축이 요청된다. '제안'은 개선방안으로 특별법 및 기본계획들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사무국운영의 활성화, 평가제도 개선(16쪽 이하) 등을 거론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부처 간 협조를 도모하는 정도의 통합체계화는 사실상 역부족이라고 본다.

세상은 이미 하이브리드화(예를 들면 雜學시대, 融合시대)로 치달고 있는데 정부가 부처 간 고립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면 한참이나 뒤진 것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슈별 통합전담기구를 만들어 부처 간 고립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예컨대 농어촌복지, 삶의 질 등의 이슈는 보건복지부, 고용고용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농림부에 둔다거나(이 경우 해당 부처의 공무원이 합류하여 소속을 농림부로), 다문화가족 문제 특히 언어습득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통합조직을 교육부에 둔다거나 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 부처의 전담부서 구축과 더불어 지자체 현장에서의 운용은 대책 수행과 관련한 인센티브 적용(찾은 인사인동으로 전담자가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도), 공정한 평가시스템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과 관련

농어촌에서는 고령자율이 높은 만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도심지역보다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제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으로 등급판정체계, 장기요양급여의 공급 불균형 침 요양기관의 경쟁 과열, 요양보호서의 열악한 근무조건, 본인부담 가중 등을 거론(32쪽 이하)하고 있다. 전반적인 문제제기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동감이다.

다만 농어촌의 지역적 특수성, 즉 과소인구, 근접성 결여, 서비스의 분산화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적기·적소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면이 적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으나 그야말로 쉽지 않은 문제다. 요양서비스 인력확보책(그것은 아마도 동시에 인구유입 유인과 결합되어야 하겠지만), 과소지역의 거점시설로서 요양시설 구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 모

메 모

메 모

